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도와 차별화되는 유인 제공이 필요한 바, 업무 추진 과정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부여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성과 중심의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46조의9 신설)

- 1) 각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최대 3천만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 2)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기관의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9(특별성과 포상금)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통상적인 직무수행 수준을 초과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 제고, 조직 운영 개선 또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행정 성과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재난·위기 대응 등 공공의 안전이나 국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과로서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② 각 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6조의9(특별성과 포상금) ①</u> <u>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를</u> <u>달성하여 통상적인 직무수행 수</u> <u>준을 초과한 공무원에게 포상금</u> <u>(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u> <u>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u> <u>1. 행정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u> <u>제고, 조직 운영 개선 또는 대국</u> <u>민 서비스 향상 등 행정 성과</u> <u>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u> <u>2.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u> <u>재난·위기 대응 등 공공의 안전</u> <u>이나 국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u> <u>한 경우</u> <u>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까지</u> <u>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과로서</u> <u>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기여한</u> <u>경우</u> <u>② 각 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u> <u>는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무원 1</u> <u>인당 최대 3천만원의 범위 내에</u> <u>서 지급할 수 있다.</u> <u>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u>

관의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성과 포상
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222